



충무해원  
세계 해천사에 빛나는 충무공 이순신의 마지막 전장지였던  
충무 바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호국의 열정과  
평민으로서의 삶의 길이 역사로 되어 출렁인다.  
그곳의 문명과 함께 면면히 이순신의 바다의 파그의  
종횡가 기억되는 삶의 정원인 이곳에 가야호로 이순신의  
마지막 정원 충무해원(忠武海園)이 펼쳐진다.

**이중무궁 순국공원 조감도**

## 목 차

■ <b>건설관련 소식</b> .....	<b>1</b>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도정시책 추진 현장 방문	
○ 경상남도, 사천-항공산업, 밀양-나노산업, 거제-해양플랜트산업 추진 탄력 기대	
○ 경상남도, 국내 리조트업계 1위 대명리조트 남해군 유치 성공	
○ 경상남도 건설관계자협의회 개최	
○ 경남도 2013년 춘계 도로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경상남도 2013년 상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경남도, 소하천정비사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 부경과학기술원법 부경과학기술원법, 경남·부산 국회의원 공동 발의	
○ 2012년 우수주택 시·군 순회전시	
○ 2014년부터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만 사용됩니다.	
○ 경남도, 전액국비 농림사업비 998억원 확보 대박!	
○ 경상남도, 장승포항 친수시설 및 방재시설 설치	

# 목 차

<b>■ 지식정보</b> .....	<b>11</b>
○ 설계감리 건설기술용역업자 입찰부담 대폭 완화된다	
○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도시계획에 달렸다!	
○ 도시공원, 도시 침수예방 녹색공간으로 재탄생	
○ 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은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수 있어 !	
○ 올 상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가격 확정	
○ 국토교통부, 공정한 건설 하도급 질서 확립에 총력	
○ 아름다운 강세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 "개발이익환수제도"크게 바뀐다	
<b>■ 최신법령 및 관련정보</b> .....	<b>21</b>
<b>■ 신기술 정보</b> .....	<b>30</b>
<b>■ 건설기술심의 결과</b> .....	<b>31</b>
<b>■ 계약심사 현황</b> .....	<b>31</b>
<b>■ 기술인 나눔 정보</b> .....	<b>32</b>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도정시책 추진 현장 방문

▶ 4월 15 ~ 16일, 사천·진주 항공산단, 진주뿌리산단, 밀양나노산단 조성 예정지 등



<진주 뿌리산업단지 조성예정지 현장 방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4월 15일 오후 사천·진주 항공국가산단, 진주 뿌리산단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항공기업 생산 현장 방문과 항공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 현장에서 서기용 사천부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당면현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항공부품 생산업체인 하이즈 항공 및 아스트를 방문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우리나라의 2020년 항공우주산업 G7 도약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 최대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사천시 축동면·향촌동, 진주시 정촌면 일원 436만㎡의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에 항공산업 핵심부품 생산기지 조성, 항공기술 개발 연구기관, 항공부품 테스트 및 인증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사천의 항공산업은 밀양(나노), 거제(해양플랜트)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미래창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 입지 중점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경남도는 항공국가산단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홍준표 도지사는 돌아오는 길에 진주 뿌리산업단지 예정지를 방문하여 이창희 진주시장으로부터 현장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진주시는 항공·조선·기계산업 등 도내 주력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촌면 일원에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업종을 입주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최근 환경문제로 사천시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이와 같이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사천시를 방문함에 따라 양 시가 뿌리산단 관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진주·사천 정책회의 개최 등의 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4월 16일에는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를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향후 R&D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노융합산업을 경남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서는 업용수 밀양시장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브리핑 받고,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 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자료 : 성장동력과 나노융합담당  
(055)211-2713

## 사천-항공산업, 밀양-나노산업 거제-해양플랜트산업 추진 탄력 기대

▶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미래창조기업 산업입지 중점지원 4건 중 경남이 3건이나 포함돼

국토교통부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후속조치로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지난 4월 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실천계획에는 4건의 미래창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입지 중점지원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사천 항공, 밀양 나노, 거제 해양플랜트 등 경남의 주력산업이 3건이나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 후 경남의 30년, 50년 번영을 책임질 미래성장동력산업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대통령 인수위와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안을 건의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이번 국토교통부의 실천계획에 반영되어 그 동안 경남 성장을 이끌어 온 조선, 기계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번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는 함안 미니복합타운 조성,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동서화합지대 조성, 남해안권 섬특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처별 업무계획과 도 현안사항과의 연관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정책 방향에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자료 :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055)211-2314

## 경상남도, 국내 리조트업계 1위 대명리조트 남해군 유치 성공

▶ 4월 16일 도청에서 대명그룹과 투자협약 체결, 2017년까지 남해에 1,200억 원 투자하여 400실 규모의 리조트 조성



〈남해 대명리조트 MOU 체결〉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광리조트 업계 1위 기업인 대명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남해군 송정지구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명그룹은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에 2017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하여 3만 3천 평 부지에 400실 규모의 관광·레저·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4월 16일 (화) 오전 11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및 남해군과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정현태 남해군수, 박흥석 대명그룹 총괄사장, 한호식 남해군의회 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남도는 대명리조트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 18일 서울에서 관광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경남에 관심을 보인 대명리조트측에 도내의 입지 후보지를 적극 추천하고, 현지방문 지원과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대명그룹은 국내 리조트업계 1위 기업으로 이미 30만 명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해에 대명리조트가 조성될 경우 기업 자체 역량만으로도 이 지역의 관광객을 연간 100만 명 이상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남 부안의 경우 2008년 대명 변산리조트 개장 후 연간 관광객 수가 2007년 285만 명에서 2010년 1,14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대명그룹은 그리스 최남단의 가장 아름다운 섬인 ‘산토리니’를 컨셉으로 하여 이번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아름다운 남해 바다와 조화를 이뤄 남해군이 국내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대명그룹이 남해군에 리조트를 건설한 후 새롭게 채용하는 150명의 운영인력의 대부분을 도내에서 충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8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0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투자규모와 고용효과가 큰 유망업종을 집중 유치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5월 24일(금)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자료 : 투자유치단 국내기업담당  
(055)211-3134



## 경상남도, 경상남도건설 관계자협의회 개최

- ▶ 4월 16일 도청에서 도내 11개 건설 관련  
유관기관 참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와 상생 발전 방안 논의



<건설관계자 협의회 개최사진>

경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11개 건설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건설관계자협의회를 4월 1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남도건설관계자협의회는 행정기관으로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는 경남지역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본부가 참여했으며, 지역 건설업체를 대표해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도 단위 단체와 경상남도개발공사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2013년도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해결책을 찾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업체를보호하고 지역 건설장비·자재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협력하는 한편, 건설 체불임금 방지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보다 더 많은 건설사업이 각 기관의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상남도 강해운 건설방재국장은 인사말에서 “도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사업은 시행주체와 상관없이 도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경남도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의회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각 기관의 현안을 해결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055)211-4613

## 경남도 2013년 춘계 도로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 4월 26일까지 시·군 등에서 국도 및 지방도 등 15,561노선 춘계 도로정비 실시

경상남도는 해빙기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수해피해에 대비하여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13년 춘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내 전 시·군과 공동으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15,561노선 9,543Km)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해빙기 등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 비탈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수해피해에 대비한 점검·정비이며,

일반적인 노면 평탄성 확보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의 청결상태 유지,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배수시설, 낙석·산사태위험지구 등에 대하여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일제 정비한 도로에 대하여 5월 중 도에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 및 현장 시정 조치 등을 실시하며 우수 시·군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춘계 도로 정비를 통하여 경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알리고, 도민과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4

## 경상남도 2013년 상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4월 26일까지 도 및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 운영, 봄 행락철 대비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경상남도는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도내에 소재한 유원시설업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점검계획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소속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창원시 등 3개 시·군의 11개 업체, 40기종의 유기기구와 제반시설을 점검하고,

4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김해시 등 3개 시·군 공무원이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3개 업체, 33기종의 유기기구와 제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점검반이 실시할 주요 점검사항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유기 기구 및 제반시설의 안전성 유무 점검, 유원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점검 등과 안전의식 고취 및 사후 조치에 필수적인 안전관리자 상시배치 여부 점검과 보험가입 여부 점검 등이다.

경상남도는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 및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및 개선사항 이행 지도, 등록 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성수기 및 재난취약 시기 도래가 유원시설과 비슷한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점검 중에 있으며, 성수기가 6월말 이후 도래하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해서는 5월말에서 6월초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유원시설의 종류, 점검시기 및 점검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세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의 점검 관계자는 이번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유원 시설업자 및 행락객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재난위험요소의 사전 발견 및 조치를 통해 봄 행락철 도내 행락객이 안전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재난관리과 안전관리팀당  
(055)211-4524

## 경남도, 소하천정비사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경남도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한 2012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종합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의령군, 거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다가오는 5월 28일 제20회 방재의 날 행사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받는다.

소방방재청은 2012년도 시행한 소하천 정비사업(전국 131개 시·군 329개소 252 km)에 대하여 각 시·도별 실적이 우수한 시·군 등 전국 90개소의 사업장을 추천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금년 3월 18일부터 3일간 현장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였다.

경남도는 2012년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창원시 등 17개 시·군 44개소에 사업비 610억원을 투자, 소하천 36.05km를 정비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12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평가 결과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실적이 우수한 의령군과 거제시가 우수로 선정되었고,

특히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 심사에서 2011년 함안군 목현천이 최우수 소하천으로, 2012년에는 양산시 원동천이 우수 소하천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국비 55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 등 연속하여 소하천관리 행정의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 자료 : 하천과 하천관리팀당  
(055)211-3944



## 부경과학기술원법, 경남·부산 국회의원 공동 발의

▶ 경상남도, TF팀 운영 통해 과기원 설립 박차

과학기술원 설립을 두고 경쟁한 경남도와 부산시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을 공동 발의하는 등 부산경남과기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1일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간에 부경과학기술원 설립을 합의한데 이어 지역 정치권에서 양 지역 공동발전의 염원을 구체화시키는데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김성찬 의원(창원시 진해구)과 김세연 의원(부산시 금정구)이 동남권 산업규모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찬, 김세연 의원은 지난 해 각각 창원과학기술원법과 부산과학기술원법을 발의하였으나, 경쟁적인 유치전보다 경남과 부산을 함께 대표하는 미래인재 육성기관을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번 공동 대표발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경남지역 15명, 부산지역 16명 등 총 31명의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부산경남과학기술원에 대한 경남·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을 보여줬다.

법안에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혁신과 기술고도화를 이끌 전문 인력 육성의 제안이유, 이사장 및 총장 등의 인적구성, 출연금 지급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찬 의원은 “경남과 부산은 막대한 산업기반과 고급인력 수요에 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바,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의 당위성에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공감했다”며, “우선 4월 임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청회 등 이후 절차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부경과기원 설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과학인, 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로 부경과학기술원 설립 TF팀을 구성하여 부경과기원 설립 타당성 연구, 중앙정부(미래부, 교육부) 및 국회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부경과기원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등 부경과학기술원 설립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미래산업과 과학정책담당  
(055)211-2753

## 2012년 우수주택 시·군 순회전시

▶ 아름다운 주택을 구경하러 오세요



<2012년 우수주택 : 김해시 장유면 소재>



<2012년 우수주택 : 함안군 가야읍 소재>

경남도는 2000년부터 당해연도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에 이바지한 우수주택을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2012년에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내 우수주택 40동을 선정하여 설계자에게는 도지사표창을, 건축주에게는 우수주택 인증패를 수여하였으며, 도민들의 아름다운 주택 건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축제 등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4월 15일부터 함안군을 시작으로 8월 30일 까지 도내 시·군 순회 사진전시를 실시한다.

또한, 순회 사진전시를 마친 9월부터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주택 사진을 게재하여 많은 도민들이 우수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주택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대지의 자연 경사면을 활용한 주택 배치, 친환경 테크(DECK)를 이용한 전경 조망, 황토벽돌 등 자연 친화적인 재료 사용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사지붕 및 소형지붕 설치, 이웃 주민들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재·석재 등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한 담장 및 조경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특히 도면, 설계자, 시공자, 실제 투입공사비 등 상세한 정보 제공으로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 도민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군 순회 사진전시를 통해 아름다운 주택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4

## 2014년부터는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 그 동안에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  
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 계층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체험식 홍보를 시행하여 주소제도의 변화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근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 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 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 들은 오래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1996년부터 시범사업,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경상남도는 대도민 인지도 및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방송지역 신문, 케이블 TV, 영화관, 우리 도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광고와 공동주택 승강기 모니터 광고, 시내버스 외부 부착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에는 (주)무학 좋은데이 보조상표 광고, 경남은행·대동백화점 고객정보 주소 전환, 도로명주소로 어버이날 효도엽서 쓰기, 생활주변 도로명주소 안내소 운영, 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 내 도로명주소 알기 교육시간 편성 등 주민밀착형 홍보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한편, 경상남도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경우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로명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도민 개개인이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  
(055)211-4583

## 경남도, 전액국비 농림사업비 998억원 확보 대박!

▶ 물가상승분 반영 시 준공까지 최대 1,300억원 이르러

경남도는 4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전액국비 사업인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에 산청군 방곡지구와 합천군 외사지구가 선정되어 순수국비 52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배수개선사업”으로 진주 답천지구, 밀양 수산지구, 산청 소이 지구, 의령 정동지구, 진주 용봉지구, 함안 남강지구, 거창 문영지구가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전액국비 47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사업유치를 위해 도 농업 정책과에서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건의 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써, 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성과여서 더욱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금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10여년 전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공사가 발주되면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최대 1,300억 원의 순수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물론, 상습 침수 피해와 가뭄으로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 강호동 농정국장은 “도 자체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국비부담률이 낮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부담 비율을 높여 도비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한편, 지방비 부담이 없는 순수 국비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자료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055)211-3613

## 경상남도, 장승포항 친수시설 및 방재시설 설치

경남도는 거제 장승포항에 총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폭풍해일 등으로 인한 배후도시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보강과 첨단기능의 방재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 동안 장승포항을 이용하는 승객 및 물동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여객 터미널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친수관광항으로의 기능전환을 위해 새로운 친수 호안을 조성하고, 여객부두 및 주차장 주변부지를 활용한 다목적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객들의 문화공간을 방재시설과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과거 태풍, 해일이나 이상고조위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기존 물양장을 정비하여 기 설치된 방호벽외 신규 방호벽 490m와 방재게이트 11개소를 설치하여 지역민의 재산권 및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신규부지 조성을 위해 기존 호안앞 7,650㎡를 매립하여 총면적 21,003㎡의 다목적 친수공간이며,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 자료 : 항만물류과 항만개발담당  
(055)211-3972

## 설계감리 건설기술용역업자 입찰부담 대폭 완화된다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4.1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건설ENG 용역업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공정성을 향상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12.7.5)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도 개선“(’12.8.17)의 후속조치이며, 추가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하도급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고 덧붙였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 참여기술자와 업체의 수행실적과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자를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써 주로 단순용역에 활용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고난도 공사로서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

\*\*\*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 : SOQ와 유사하나 최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수행제안서의 평가비중이 높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SOQ·TP 평가대상이 축소된다. 그 동안 SOQ·TP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은 입찰 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가 인정된다.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5억원 상향되었으며,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였다.

구분	현행			변경		
	용역비	기본계획/기본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기본계획/기본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용역규모별적용기준	2.3~5억	PQ		2.3~10억	PQ	
	5~10억	PQ후 SOQ	PQ	10~15억	PQ후 SOQ	PQ
	10~20억		PQ 후 SOQ	15~25억		PQ 후 SOQ
	20억 이상	PQ후 TP		25억 이상	PQ후 TP	

\* 감리용역은 20억 이상인 경우, PQ후 SOQ 시행(TP는 폐지)

- ②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가 SOQ·TP에도 도입된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 제도가 SOQ·TP에도 도입된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TP\text{보상비} : \text{예정가격} \times (0.3\% + \frac{\text{기술점수} - 85}{15} \times 0.3\%)$$

\* 다만, SOQ는 TP보상비 산식의 50%만 지급

③ SOQ·TP 평가가 간소해진다.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정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가 삭제되며,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도 제고하였다.

구분	현 행	변 경
시행 규칙	발표기법, 3차원 시뮬레이션 등 기술능력과 상관없는 평가지표 존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삭제하고 배점도 조정

④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현 행	변 경
시행 규칙	2.3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가격입찰 시행	5억원 미만 설계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 가능

⑤ 아울러, 설계용역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SOQ·TP 심의 과정에서 로비 시비가 만연하고 있어 비리 적발 업체는 최고 10점 감점하여 사실상 수주가 어렵게 하는 등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설계기준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에 비리감정조항 및 설계내용 사전공개·평가위원 사전설명 기회제공 등 반영(감리용역의 경우, 발주청장이 동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구 분	감점사유	감점	감점 기간
평가 매뉴얼 (비리 감점 규정)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당해 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 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 부터 2년

위 개선조치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새로이 적용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관  
O44)201-3566

##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도시계획에 달렸다

### ▶ 국토교통부,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안) 발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재해대응능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홍수취약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 개발로 인해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국가 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으며,
-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기본 계획,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사전 분석의 일환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안)'을 발표하고 4.11(목) 지자체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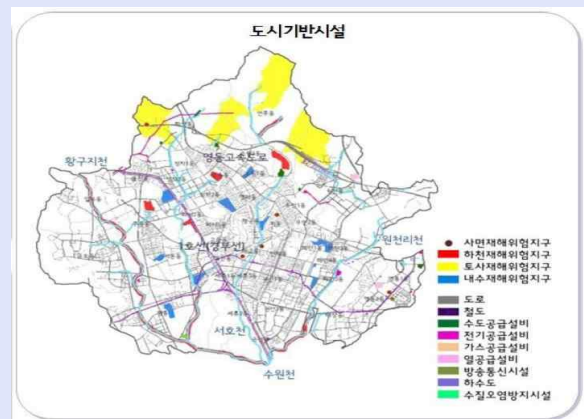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의 내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재해취약성 분석은 기후변화 재해 유형(폭우, 폭염, 산사태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하여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재해취약정도에 따라 I~VI등급으로 분류하여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강우량, 기온 등 기후요인만으로 재해 위험을 분석한 기존 분석들과는 달리 해당 도시의 개발상황(불투수율, 반지하주택 비율 등)을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방재를 고려한 도시개발 사례 : 하천변에는 녹지대·공원 등을 조성하고, 도심 저지대에는 우수 저류시설, 차수판,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을 설치

국토교통부는 재해취약성분석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재해취약성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내실화하고, 지자체에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국토 전반을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도시(Disaster Free City)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 도시공원, 도시 침수예방 녹색공간으로 재탄생

▶ 양재근린·목포이로공원 올해 시범  
사업...2014년 이후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을 확충하여 빗물 투수면적을 늘리고, 빗물유출 조절기능을 강화하는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도시공원이 부족한 인구밀집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이용형태,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태형·운동시설형·지하매설형·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저류형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국고 최대 25억 지원

○ 올해는 시범적으로 서울 양재근린공원과 목포 이로공원 등 2개소에 대해 설계를 추진한다.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방법은 기존 우수배수시스템(하수관거, 빗물펌프장 등)의 용량을 증대하는 방법과, 저류시설을 확대하여 빗물의 유출량을 낮추는 방법 등이 있다.

하수관거보급이 완료된 도시지역에서 하수관거의 용량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 침수지역에 분산형으로 저류시설을 설치·확대하는 방안은 기존의 우수배수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강우를 저류시켜 집중호우에 대처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심내 상습침수지역을 조사하고, 2014년에는 사업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저류형 도시공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 인근에 저류형 도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집중호우시 주택·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저류시설 상부는 인근주민이 이용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태형 저류시설>



<복합형 저류시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2

## 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은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수 있어!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업과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 덜어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박모 씨는 수년전에 축사내 비가림용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으나,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명령을 받았다. 그렇다고 축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철지도 못하는 실정으로 시름이 컸다.

◆ 이번에 축사용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어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축사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고, 공장 건축기준을 한시적(2015. 6월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내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허용하고,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여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2013.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한을 2015. 6.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은 인접대지경계선이나 건축선에서 1~6m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여 건축

☞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되고, 건축기준 완화 기한 연장으로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축사 현황( '13. 3월 현재) : 총 163천동 [우사 153천동, 돈사 6천동, 계사 4천동] (농식품부 자료)

\* 건축기준 완화 적용 공장( '12년말) : 옥상에 가설건축물 설치(100건), 대지안의 공지 규정(3,172건)

\* 전국 공장 건축물 현황( '12년말) : 총 276,311개동

③ 또한,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 앞으로,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 대수선 절차가 쉬워지고, 설계 비용도 절감(설계비 1만원/3.3㎡당)되어 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2. 기둥·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3.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4.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5.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 수선·변경하는 것

☞ 4~7호 :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3

## 올 상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가격 확정

- ▶ 조달청, 민·학·관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 자재비 평균 1.27% 상향조정 ... 관련협회 참여·조사품목 확대 등 공정성 확보

올해 상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7%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중)은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앞으로 정부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시설자재 등 총 10,114품목(시설자재 9,087품목, 시장시공가격 1,027품목)에 대한 가격을 확정하고 오는 4월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품목별 가격현황을 살펴보면, 가격이 오른 품목은 도로시설, 연돌류 등 2,872개, 하락 886개, 포함 5,677개, 신규679개로 나타났다.
- 이번에 확정된 자재가격은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철강재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공사비 책정 현실화를 위해 시중노임단가 등 상승된 인건비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 특히,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관련협회\*\*가 제시한 가격자료도 조사가격에 반영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조사대상 품목을 4.9%(471품목) 확대·조사했다.

\*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 정부기관, 학계, 건설관련협회 등 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본 위원회와 4개 분과(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총 33명으로 구성



**\*\* 가격조사 참여협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한, 그동안 조달청이 별도로 조사하여 가격을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시장시공가격 적용을 이번에도 축소·적용하고, 표준품셈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그동안 표준품셈과 별도로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해 왔는데, 공사 낙찰률을 감안할 때 실제 시공가격에 못 미친다는 건설업체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따라서, 조달청은 표준품셈이 있는 품목의 경우,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 편차가 큰 일부 품목에 한하여 조달청 조사가격을 적용하기로 하고,

- 지난해 표준품셈 적용 기준안\*을 마련한 이후 표준품셈과 중복되는 품목 중 시장시공가격 적용 품목을 654개 품목에서 올 상반기까지 47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 **중복품목에 대한 표준품셈 적용기준안** : 시장시공가격이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중복되는 품목 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비 87%이상인 품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

이번 확정된 시설자재 가격은 공공기관과 설계사무소 등에서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가격정보, <http://www.g2b.go.kr/>)에 공개되며,

○ 「인터넷 가격검증(Feed-Back)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적정공사비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가격검증(feed-back) 시스템** : 조달청에서 공표한 시설자재 가격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정부발주 공사가격의 기초가 되는 자재 가격에 대해, 정부와 민간, 학계전문가가 함께 모여 심의·확정함으로써, 정부공사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 지속 요구해온 품셈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윤현도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가격조사 심의 결과는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악화로 자재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업계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 앞으로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가격을 반영해 공사품질 확보와 기업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조달청 건축설비과  
(070)4056-7390**

## 국토교통부, 공정한 건설 하도급 질서 확립에 총력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전문 및 설비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9일, 건설 하도급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 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 및 설비건설 업계와 간담회의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일 성남 태평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근로자들과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서

-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산업분야 중 건설 하도급 업계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는다.

-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거래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건설 하도급 근절이 필수적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 체불, 부당한 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건설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4일 '13년 업무보고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 < 4.4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 관련 과제 >

-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저가 낙찰(82%미만)받은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 장비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시행
  -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그 효력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건설불공정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 실시 등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근로자 임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열악한 위치에 있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497

## 아름다운 江세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 ▶ 찾아가는 하천정책설명회 우리ㄱ룹 길라잡이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4월 30일부터 4차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담당자들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하천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행 하천관리법령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정부의 주요 하천정책도 소개할 계획으로,

- 홍수소통 위주로 국민의 삶과 격리된 공간이었던 하천을 자연과 조화되는 친수 공간, 생태자연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하천의 ‘관리와 이용’에 중점을 두는 하천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 강별 비전 및 발전 전략, 구역별로 환경생태와 조화되는 세부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하천별 관리계획’ 마련,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여 하천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유역관리협의회’ 운영 등 금년도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지역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하천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 앞으로 지역을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하천이용과 강과 함께 행복할 수 하천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 ○ 정책설명회 행사개요

- 행사명 : 찾아가는 하천정책설명회 ‘2013 우리ㄱ룹 길라잡이’
- (時 / 場) : ‘13.4.30, 5.1, 5.14~15, 14:00~17:00

구분	일시	대 상 유 역	장 소
제1차	4.30(화)	금 강	대전국토청 대회의실
제2차	5. 1(수)	낙동강	부산국토청 대강당
제3차	5.14(화)	한 강	한강홍수통제소 시청각실
제4차	5.15(수)	영산강 + 섬진강	익산국토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 업무 담당자

■ 자료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044)201-3625

##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

### ▶ 부담률 차등화, 가산금제도 폐지 및 환급제도 도입,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하였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 최근 농지·산지·초지전용 등을 통한 개별입지사업에 의하여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 등이 농경지나 경관이 수려한 강변 또는 숲속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이 성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이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하는 한편, 개별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3. 04. 17(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3호)
- 예고기간 : 2013. 04. 17 ~ 05. 07(21일간)
- 개정이유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 시기 연장 사유를 추가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 □ 주요내용

- 가. 원 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 ( 안 제 3조제3항)
  -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나.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 시기 연장 사유 추가 ( 안 제 18조제5호)
  -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 3370, 팩스 044-201-5684)

■ 자료 : 법제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3. 04. 17(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4호)

□ 예고기간 : 2013. 04. 17 ~ 05. 07(21일간)

### □ 개정이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 27조 제1항제2호)

### □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 3370, 팩스 044-201-5684)

■ 자료 : 법제처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3. 04. 0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7호)

□ 예고기간 : 2013. 04. 09~ 05. 20(42일간)

### □ 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 (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 포, 2013.6.19 시행 ) 됨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 공동주 택의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555호, 2012.12.18 공 포, 2013.6.19 시행 ) 됨에 따라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한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상향시켜 주거환경 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1) 시행령 개정안

가. 원 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안 제 3조 제1항 개정)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1.5월 14㎡로 상향 되었으나 , 원 룸형 도시형생활 주택의 최소주거면적은 도입 당시 기준인 12㎡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14㎡로 상향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하자 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안 제59조 제7항, 제8항 신설)

사업주체는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 (안 제62조의4 및 제62조의5 신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 15인으로 구성하는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들을 순서대로 배정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에는 5명 이내에서 부위원장을 두고,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 별로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함

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단순사건의 의결(안 제 62조의6 및 제62조의10 신설)

분과위원회 내에는 5인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5개 이내에서 구성·운영하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로 명확히 함. 다만, 결로, 난방 및 곰팡이 발생 등 피해사례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한 단열공사 하자는 제외함

마.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이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 부담 (안 제 59조 개정)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 (담보 책임존속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바. 제1종 국민주 택채권의 조기상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92조 및 제96조)

제1종 국민주 택채권은 만기 시에만 상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시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044-201-3377, fax 044-201-5531)

■ 자료 : 법제처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입법예고일 : 2013. 04. 08(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2호)

□ 예고기간 : 2013. 04. 08 ~ 04. 29(22일간)

### □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 (2013. 6. 30)을 2015. 6. 30일 까지 연장하고, 축산 농가 및 기업 활동의 건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나 공장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며,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기한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 적용 기한 연장 (안 제15조 제5항제8호 및 별표 2 비고 개정)

- (1)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등을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 숙소용으로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 (1~6미터)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적용 기간을 2015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함.
- (2)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장·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 등 (안 제15조제5항제10호 및 제12호 개정)

- (1) 공장에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용 천막구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천막구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음.
- (2)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도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이나 공장과 창고시설에 창고용, 간이포장·수선용으로 시장 등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3) 축산 농가 및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 등 구조 안전 확인을 생략 (안 제 32조제2항 개정)

- (1) 3층 이상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구조 안전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조 안전 확인을 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분의 1이내 또는 1개층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항목 중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
- (2) 앞으로는 주계단 · 피난계단,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 · 벽 또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경계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경우나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하고 , 이 외에 지붕틀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함 .
- (3) 경미한 수선 · 변경의 대수선의 경우 지진의 안전 확인을 생략하므로써 절차 간소화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

#### □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4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3,3764, 팩스 044-201-5574)

■ 자료 : 법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입법예고일 : 2013. 03. 14

□ 예고기간 : 2013. 03. 14 ~ 04. 23(41일간)

### □ 개정이유

청렴계약,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법률 제 11547호, 2012.12.18. 공포) 됨에 따라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의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1.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 신설 (시행령안 제 12조의 2, 3)  
가.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청렴 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  
나.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2.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신설 (시행령안 제 76조의 2 내지 4)  
가.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담합·뇌물 제공·서류 위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과징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기간 연장 (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 (3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근거 마련 (시행령 안 제 76조의 5 내지 9)
  - 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
  - 나. 공사 분야와 물품·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4. 입·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확대 (시행령 안 제111조, 제112조)
  - 가.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 억원 이상으로 , 물품·용역은 1.5 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
  - 나. 이의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기구의 명칭을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5.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등
  - 가. 철·궤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 (신설)하고, 부당 또는 부정한 공사에 대한 감리의 책임 규정을 신설 (규칙 안 제72조)
  - 나. 군 급식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까지 가 중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규칙 안 제76조)

#### □ 의견제출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 계약제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 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 (단 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 번호
3. 보내 실 곳
  - 주소 : (33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 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와
  - 전화 : 044-215-5215, ○ 팩스 : 044-215-8113
  - 이메일 : le [ina@mosf.go.kr](mailto:ina@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http://www.mosf.go.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법제처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 입법예고일 : 2013. 04. 23

□ 예고기간 : 2013. 04. 23 ~ 05. 13(21일간)

□ 개정이유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부지에 대해서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적정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면적요건 완화(안 제11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을 30만 제곱미터(광역시 및 도서지역은 15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되,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로 함.

□ 의견제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50) 5동-2 624호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548, fax 044-201-5665)

▶자료 : 법제처

## 후타콘크리트의 일부를 해체하여 교량의 레일형 신축이음장치를 핑거형으로 교체하는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메크로드
	(주)수성엔지니어링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552호
- 기술분야 : 토목/교량/교량부속시설물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레일형 신축이음장치(신축량 480mm 이하) 양단부의 보강형강을 제거하지 않고 형강의 상부 피복콘크리트만을 제거한 후 노출된 보강형강의 상면과 측면을 이용하여 베이스판과 수직보강리브를 용접 정착시킨 후 베이스판과 핑거플레이트를 고장력 볼트로 조립하여 레일형을 핑거형으로 신축이음장치로 교체하는 기술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레일형 신축이음장치(신축량 480mm 이하) 보강형강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에지 및 중간레일, 피복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베이스판과 수직보강리브를 용접 정착시킨후 베이스판과 핑거플레이트를 고장력 볼트로 조립하는 신축이음 장치 교체 기술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연왕

### 2013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결과

- 건 명 :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외 3건
- 심의일자 : 2013. 4. 26.(금)
- 요 청 자 : 밀양시, 함안군, 창원시, 거제시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심의결과
2013-04-01	실시설계 (적정성)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위 치 :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일원 · 사업내용 : 호안 및 생태탐방로 9.2km · 사 업 비 : 450억원(공사비 297, 보상비 등 153)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조건부 채택
2013-04-02	실시설계 (적정성)	칠원(2단계) 하수 관거 정비사업	· 위 치 : 함안군 칠서면 칠원면 일원 · 사업내용 : 오수관거(D80~400mm) L=50.9km · 사 업 비 : 284억원(공사비 257, 보상비 등 27) · 사업기간 : 2013 ~ 2016년	조건부 채택
2013-04-13	입찰방법	창원 새야구장 건립사업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일원 · 사업내용 : 야구장건립 62,045㎡(지하2,지상5) · 사 업 비 : 1,280억원(공사비1,155, 감리비등 125)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일괄입찰
2013-04-04	실시설계 적격평가	신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 위 치 : 거제시 거제면 범동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 L=1,418m(교량 L=620m) · 사 업 비 : 487억원(공사비 449, 보상비 등 38) · 사업기간 : 2013 ~ 2017년	설계적격

■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5

##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3년 4월	<b>계</b>	<b>60</b>	<b>69,041</b>	<b>64,107</b>	<b>4,934</b>	<b>7.15%</b>	
	공사	토목	32	52,610	48,646	3,964	7.54%
		건축	5	3,903	3,704	199	5.11%
		기타	9	9,864	9,141	723	7.33%
	용역	5	1,734	1,716	18	1.05%	
	물품	9	930	900	30	3.20%	

■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에너지평가사 정책 토론회

- 일시 : '13. 5. 3(금)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신관 2층)
  - 주최 : 국회의원 이강후
  - 주요 내용
    -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선진화 이슈 및 정책제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평가 방법 개발방향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추진방향
  - 참석 :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명
- ※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02-738-9001(代)

## 2013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워크숍 개최

- 일시 : '13. 5. 8(수) ~ 5. 9(목) 2일간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주최 : 한국하천협회
  - 주요 내용
    - 정부 정책방향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각계 전문가의 강의 및 종합토론 등
    - 국내 하천관련 기술 및 자재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 참석 : 회원 및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등 약 500여명
- ※ 금번 워크숍 행사와 관련하여 건의 및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국 ☎ 02-565- 7962(代)

## 경남지역 VE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일시 : '13. 5. 21(화) 14:00~18:00
  - 장소 :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대강당
  - 주최 : 한국건설관리학회, 경상남도
  - 주요 내용
    - 건기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에 관련한 세미나
  - 참석 : 업무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
    - 참석신청 : 2013. 5. 10.
- ※ 문의 경상남도 기술심의담당  
☎ 055-211-4625

## 온라인 턴키마당 전국 순회교육

- 일시 : '13. 6. 21(금) 14:00~16:30
  - 장소 :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대강당
  - 주최 : 국토교통부
  - 주요 내용
    - 온라인 턴키마당 사용설명
    - 설계심의 운영 표준안 설명
    -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 등
  - 참석 : 업무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명
    - 참석신청 : 2013. 5. 3.
- ※ 문의 경상남도 기술심의담당  
☎ 055-211-4626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